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23

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신영대·문금주·전재수

김성환 • 민형배 • 박지원

유준병 • 이훈기 • 김윤덕

박희승 • 박정현 • 임오경

강선우 · 서삼석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,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게 장제비·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,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음.

그러나 연간 국내 뇌사 추정 환자 7,000여 명 중 장기기증자는 6% 인 450여 명으로 이는 스페인의 38% 등 유럽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 치로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.

또한, 장기기증협회에 따르면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55.8%에 불과하고,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69.4%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우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

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6조의2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의 제목 "(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)"을 "(장기등기증의 날 및 생명나눔 주간 지정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9월"을 "9월 9일을 장기등기증의 날로 하며, 9월"로 한다.

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전단 중 "대한"을 "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"를 "제4항에 따른 사업에"로 한다.

- ②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있다.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교육급여
- 2.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보호
- 1. 추모기념공원 조성
- 2. 추모기념관 설립

3. 그 외 장기등기증자를 추모하고 기념할 수 있는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6조의2(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제6조의2(장기등기증의 날 및 생 <u>공원 조성 등)</u> ① 장기등기증 <u>명나눔 주간 지정</u>등) ① ----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.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 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 -----9월 9일 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 | 을 장기등기증의 날로 하며, 9 눔 주간으로 한다. ②・③ (생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32조(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제32조(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) ① (생 략) 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및 장 <신 설> 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교육급여 2.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보호 ② (생략)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-대하

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 른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.

<신 설> <신 설> <신 설>

④ (생 략)

⑤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
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사업의
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
,
1. 추모기념공원 조성
2. 추모기념관 설립
3. 그 외 장기등기증자를 추모
하고 기념할 수 있는 사업
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<u>⑥</u>
<u>⑥</u> <u>제4항에 따른 사업에</u> -
<u></u>